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. 7. 15 선고 2020가단31759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능

담당변호사 유능중, 유지훈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7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1. 5.부터 2020. 4. 13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선영

별지